



제 3 3 8 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 0 2 3 . 3 . 1 0 (금)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0
제출일자	2023. 02. 24.
회부일자	2023. 02. 28.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대상기관	사 업 명	출 연 예 정 액	비 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250,000	
1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 지원	200,000	‘22~‘24 5억원
2			경북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 지원	50,000	‘22~‘25 2억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심사의 근거 및 필요성

-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 이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절차 강화를 통해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 여부인지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4년 12월에 정식 출범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붐 조성 및 창업교육,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ICT융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촉진 및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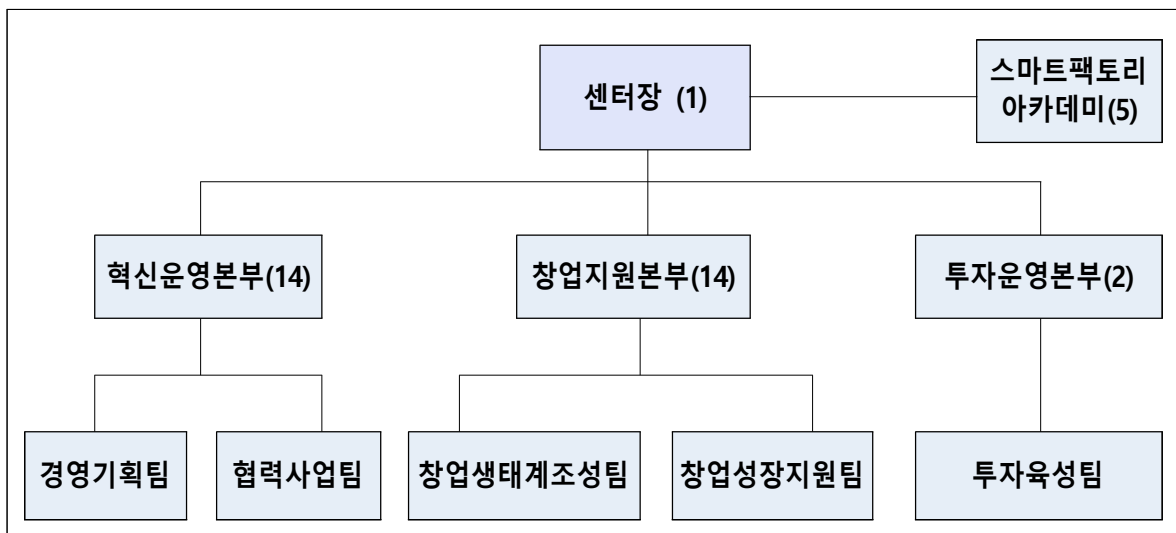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반현황

- ▶ 설립 일 : 2014. 12. 17
-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층
- ▶ 파트너기업 : 삼성전자(주), 인탑스(주), SAP코리아 등
- ▶ 인력구성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책임	선임	주임	사원		지자체	대기업	기타
정원	19	1	3	4	6	5	-	-	-	-
현원	36	1	3	4	7	4	10	-	7	-

※ 파견인력 : 7명 (삼성전자 2, 스마트팩토리아카데미 5)

- ▶ 조직도



- 최근 5년('17~'21) 수도권-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억원,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18,029	82.3	25,299	81.5	30,685	79.4	30,986	78.2	57,672	81.8
서울	12,719	58.1	17,097	55.1	23,041	59.6	21,831	55.1	43,243	61.4
비수도권	3,866	17.7	5,756	18.5	7,947	20.6	8,656	21.8	12,795	18.2
경북	314	1.4	330	1.1	453	1.2	996	2.5	1147	1.6
합 계	21,895	100.0	31,055	100.0	38,632	100.0	39,642	100.0	70,467	10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 수도권의 벤처투자 집중도('21년 기준 약 82%)는 벤처투자 대상 기업(중소·벤처·기술창업기업)보다 더욱 편중되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벤처/기술창업기업 현황 (개사, %) -

구 분	중소기업 ('19년 기준)		벤처기업 ('21년 기준)		기술창업기업 ('21.10월 기준)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수도권	3,533,662	51.3	23,794	62.1	126,730	63.9
서울	1,474,464	21.4	10,450	27.3	47,016	23.7
비수도권	3,354,773	48.7	14,525	37.9	71,547	36.1
경북	347,313	5.0	1,551	4.0	6,773	3.4
합 계	6,888,435	100.0	38,319	100.0	198,277	10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 특히, 자본, 경험,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청년창업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의 목적, 대상, 기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창업 초기 일시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만 그치지 않고, ‘창업 → 성장 →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매 단계마다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경우 출연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⁹⁾에 따라 설치된 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및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참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운용 현황

조합명	펀드 조성액 (억원)	투자종류	역 할	운영주체 (사)	참여 방법	펀드성격, 대상, 목적 등
경북 청년애포 ESG 벤처펀드	50	벤처투자 조 합	GP(업무집행 조합원)	경북창조 경제혁신 센터, 임팩트 스퀘어	직접 구성	• 임팩트펀드 • 청년대표이거나 청년비율 50%이상 창업기업투자 • ESG 관련 기업
와이앤아쳐 로컬 펌프업 투자조합 1호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50.2	벤처투자 조 합	LP(일반조합원) , 기업추천 역할	와이앤 아쳐(주)	간접 관여	• 대구·경북·강원 초기창업 기업
C-Fund 1호 (인라이트3호 CG펀드)	202.5	벤처투자 조 합	기업추천 (IR, 상담회, GEP 연계 등)	인라이트 벤처스(유)	간접 관여	• 경북 중소기업체 및 벤처업체
C-Fund 2호 (인라이트 CG2호 펀드)	121.5	벤처투자 조 합	기업추천 (IR, 상담회, GEP 연계 등)	인라이트 벤처스(유)	간접 관여	• 경북 중소기업체 및 벤처업체
지라이징 1호 개인투자조합	1	개인투자 조 합	GP(업무집행 조합원)	경북창조 경제혁신 센터, 온비즈아이	직접 구성	• 초기창업 기업